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(임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51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3. 4.

발 의 자 : 임종성 · 김정호 · 안규백
박상혁 · 안호영 · 양이원영
윤후덕 · 최종윤 · 이규민
정춘숙 · 서영석 · 노응래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‘근로조건의 결정’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고, 쟁의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 또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여 노조활동이 제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아울러, 노조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,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,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,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넓힘(안 제2조제5호).
- 나.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, 쟁의행위,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(이하 “쟁의행위등”이라 한다)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, 특히 그 쟁의행위등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·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함(안 제3조제1항·제2항 신설).
- 다. 「신원보증법」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, 사용자의 영업손실,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도 노동쟁의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함(안 제3조제3항·제4항 신설).
- 라.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,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조합원수·조합비·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

함(안 제3조의2 신설).

마.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,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의3 신설).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“노동쟁의”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(이하 “근로관계 당사자”라 한다)간에 임금·근로시간·복지·해고(「근로기준법」 제24조에 따른 해고를 포함한다)·그 밖의 대우 등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의 제한)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, 쟁의 행위,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(이하 “쟁의행위등”이라 한다)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. 다만, 폭력이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,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

없다.

③ 「신원보증법」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정의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.

④ 사용자의 영업손실,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손해배상액의 제한)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.

②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, 조합비,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조의3(손해배상액의 감면청구) ① 제3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의무자(이하 “배상의무자”라 한다)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정의행위등의 원인과 경위

2. 사용자의 영업 규모, 시장의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

3.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정도
4. 배상 의무자의 재정 상태
5.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도
6.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정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第2條(定義)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“<u>勞動爭議</u>”라 함은 <u>勞動組合</u> 과 <u>使用者</u> 또는 <u>使用者團體</u> (이하 “<u>勞動關係 當事者</u>”라 한다)間에 <u>賃金·勤勞時間·福祉·解雇</u> 기타 <u>待遇等 勤勞條件의 決定에 관한 主張의 不一致로 인하여 발생한 紛爭 狀態를 말한다.</u> 이 경우 <u>主張의 不一致라 함은 當事者間에 合意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自主的 交渉에 의한 合意의 餘地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.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第3條(損害賠償 請求의 제한) <u>使用者는 이 法에 의한 團體交渉 또는 爭議行爲로 인하여 損害를 입은 경우에 勞動組合 또는 勤勞者에 대하여 그 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.</u></p>	<p>第2條(定義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“<u>노동쟁의</u>”라 함은 <u>노동조합</u> 과 <u>사용자</u> 또는 <u>사용자단체</u> (이하 “<u>근로관계 당사자</u>”라 한다)간에 <u>임금·근로시간·복지·해고(「근로기준법」 제24조에 따른 해고를 포함한다)· 그 밖의 대우 등 근로조건 및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.</u>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의 제한) ① <u>사용자는 단체교섭, 쟁의행위,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(이하 “쟁의행위등”이라 한다)로 인하</u></p>

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. 다만, 폭력이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,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.

③ 「신원보증법」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.

④ 사용자의 영업손실,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

<신 설>

<신 설>

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제3조의2(손해배상액의 제한) ①

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.

②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, 조합비,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조의3(손해배상액의 감면청구)

① 제3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의무자(이하 “배상의무자”라 한다)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쟁의행위등의 원인과 경위
2. 사용자의 영업 규모, 시장의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

	<p><u>원인</u></p> <p>3. <u>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</u> <u>사용자의 노력 정도</u></p> <p>4. <u>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</u></p> <p>5. <u>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</u> <u>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도</u></p> <p>6. <u>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</u> <u>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</u> <u>정</u></p>
--	---